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30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52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특별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20. 5. 22. ○○ ○○구 C 대 415.4㎡ 중 2/3 지분에 관하여 수탁자를 외손자인 원고,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사후수익자를 원고(잔여 재산 귀속지분 4/9), 아들 D(잔여 재산 귀속지분 2/9)으로 정하여 유언대용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30

다)을 체결하였고, 2022. 11. 29. 사망하였다(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3. 4.경 피고에게 ○○ ○○구 C 대 415.4㎡ 중 4/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100,797,780원, 지방교육세 7,596,060원, 농어촌특별세 4,654,690원 합계 113,048,530원(각 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취득이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하여 취득세 신고기한은 60일이 아닌 6개월이 적용되고, 취득세율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8. 4.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취득세 신고기한과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포괄유증'에 해당하고, 원고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상속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여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30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는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포괄유증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여부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망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에 관하여 민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에 맞는 유언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포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가산세 감면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30

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고, 민법이 정한 유언의 형식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세무사들과 상담 과정에서 취득세 신고기간을 6개월로 안내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30

별지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30

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